(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

2. 보험의 종류

1형 즉시형, 2형 거치형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개인계약/부부계약)	정액형(10년,20년,100세보증)			
	조기집중형(10년,20년보증)			
확정연금형	확정연금형(5년,10년,15년,20년,30년)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환급플랜(10년,15년,20년)			

4. 연금개시나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나이,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의 종류	연금개시나이(Y)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즉시형	45세 ~ 80세	45세 ~ 80세	일시납
거치형	45세 ~ 80세	만15세 ~ (Y-1)세	일시납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임.

5. 보험기간

보험의 종류	보험 기간				
	종신연금형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즉시형 상속(확정연금형			보험계약일부터 확정연금지급기간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까지	
		종신플	플랜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환급플랜		보험계약일부터 만기(10년 · 15년 · 20년)까지	
보호 거치형 연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Y세(45세 ~ 최고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확정연금 지급기간(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까지	
		상속연금형	종신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환급플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만기(10년 · 15년 · 20년)까지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7.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로 최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거치형에 한함)

- (1)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1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 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 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1회에 납입 가

능한 금액은 5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 (3)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2.5%,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2.0%, 15년 초과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의 한도를 적용한다.

8.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 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상속연금형 종신플랜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주계 약의 해지환급금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거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 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바.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사이율로 한다.
- 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 간 확정 적용한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1) 내부지표

내부지표 산출식=
$$\frac{2\times (I-E)}{A_{12}+A_0-(I-E)}$$

(주)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₁₂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₀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 (주)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 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한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 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라. '다'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다'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마.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5년 초과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하며,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 바.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 에 따른다.

10. 기타사항

가.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고액계약 할인에 관한 사항

(1) 일시납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일시납보험료 1억원 미만	
(다만, 일시납보험료 8천만원 초과 1억원	일시납보험료의 0%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일시납보험료 1억원 이상 ~ 2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의 0.3%
일시납보험료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 2억 초과금액의 0.7% + 60만원
일시납보험료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 3억 초과금액의 1.0% + 130만원
일시납보험료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일시납보험료 4억 초과금액의 1.2% + 230만원
일시납보험료 5억원 초과	일시납보험료 5억 초과금액의 1.5% + 350만원

(2)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 할인금액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더하여 적립한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1)' 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라.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 마.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에 한하여 연금지급주기는 월단위로 한다.
- 바.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